

예 산 총 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99,936,458	53,998,094
일반회계	1,568,449,783	47,053,493
특별회계	231,486,675	6,944,600
공기업특별회계	215,165,975	6,454,97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4,079,729	1,922,39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1,086,246	4,532,587
기타특별회계	16,320,700	489,621
주택사업특별회계	1,219,236	36,57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561,956	106,859
농공단지특별회계	5,328	16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9,120	1,1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77,529	44,3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43,029	211,291
수질개선톤별회계	1,194,890	35,847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00,000	18,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23,612	3,708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056,000	31,6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6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